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수정안

의 번	안 호	2482-1
--------	--------	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5. 8.

발 의 의 원 : 신달호 의원,
양은숙 의원, 이연숙 의원

1. 수정이유

- 당초 조례안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 시 비용 지원 대상(조합 또는 협회)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안정적이고 투명한 사업 집행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안 제5조(지원 사업 신청) 제목 외 부문 중 당초 '제3조제2항'에서 '제4조제2항'으로 수정

붙임 수정안 1부.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제3조제2항”을 “제4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「자동차관리법(법률)」(2024.2.20. 일부개정·시행)

제67조(사업자단체의 설립)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조합 또는 협회(이하 “조합등”이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
② 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.

③ 조합등을 설립하려면 그 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(發起)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

④ 조합등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삭제
2. 삭제
3. 삭제
4.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자율 지도
5.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의 처리
6. 소속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공동발전에 필요한 업무

⑤ 조합등의 정관 또는 지도·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.

⑥ 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